

제3분과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성과와 과제**

- 법령, 기준, 시스템을 중심으로 -

정 윤 한(복식부기담당사무관)

1. 복식부기 혁명

2007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식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가 발생할 때 장부의 왼쪽(차변)과 오른쪽(대변)에 동일한 금액을 거래의 실제 내역인 원인과 결과를 반영하여 기록하는 회계기록방식이다.

어떤 제도이던지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역시 생소함과 어려움을 동시에 갖게 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의의가 많이 알려져서 더 이상의 극단적인 거부감은 없지만 아직도 정확히 그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많다 할 것이다.

250개 전 지자체에서 복식부기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 제도는 단순히 복식부기 업무 전담자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전 공무원이 최소한의 기본교양 정도는 알아야 한다.

필자는 농담삼아 “앞으로의 공무원은 복식부기를 아는 공무원과 그렇지 못한 공무원으로 나뉘진다”라고 말한다. 그 의미는 단지 장부기록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에 소요되는 비용과 성과를 회계적으로 제대로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일하는 지자체나 정부가 얼마만큼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행정에 있어 여러 가지 혁신적 내용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주로 행태적으로 일하는 방법론에서 그 주류가 있는데 기본 인프라,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제도 개혁, 특히 예산회계분야에서의 개혁은 이 복식부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일본의 한 학자는 복식부기 회계의 행정예의 도입을 회계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을 통한 혁명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시화 되고 있다.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논리

1) 회계시스템 개혁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현행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처리와 결산보고방식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거래의 인식과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회계처리를 통한 재무결산보고서의 작성과 외부공시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기존의 현금의 수입이나 지출의 단면만을 기록하는 방식에서 현금의 증감 외에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및 수익, 비용의 증감 등을 모두 표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으로는 재정의 투명성, 회계책임성 및 성과측정을 위한 재정정보 산출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원가산정, 성과측정,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을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다.

2) 새로운 회계시스템의 효과

새로운 재정정보인프라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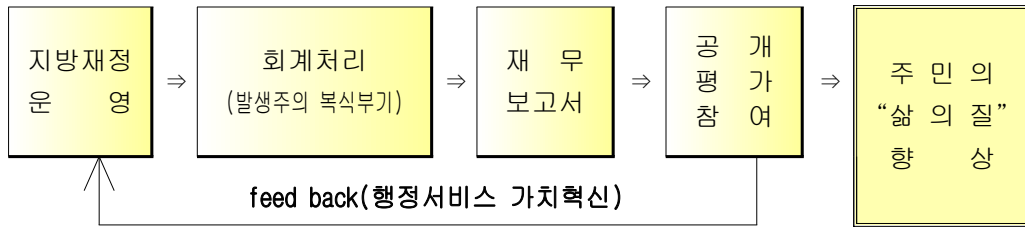
첫째, 성과지향의 정부운영이다. 기업형 회계방식은 경쟁과 책임 등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전제로 행정서비스의 원가산정과 성과측정을 통해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둘째, 고객중심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전제로 주민들이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재정운영에 참여하는 통로까지 마련된다면 고객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 정부는 노력하게 된다.

셋째, 혁신적 재정운영이다. 점차 선진국으로 진입할수록 저성장과 재정압박이라

는 환경에 적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효과를 기초로 행정서비스의 가치향상이 이뤄지고 이는 결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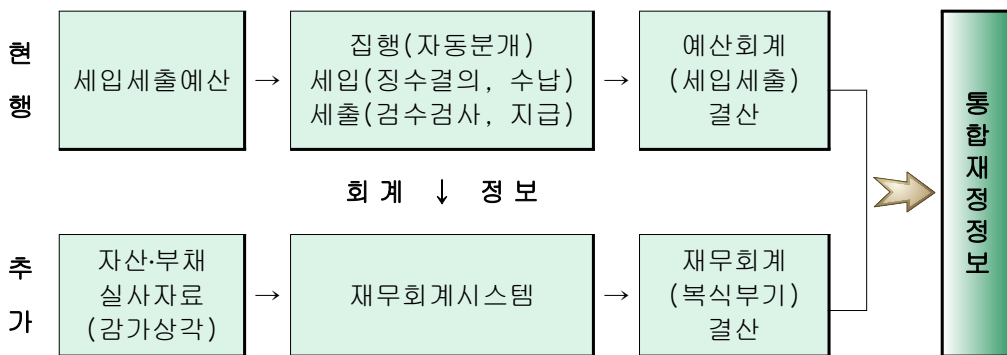


3.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1) 제도의 의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 및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 내역을 상장기업처럼 일반회계원칙에 입각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행 예산회계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기제로서 도입하는 것이며 다음 그림과 같은 두가지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는 프로세스를 구현한다.



2) 현행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의 비교

| 구분 | 현행 예산회계 | 복식부기회계 |
|--------|---------------------------------|--|
| 의의 | 예산의 집행실적 기록 (장-관-항-목) | 재정운영성과 및 재정상태 보고 (수익과 비용, 자산과 부채 등) |
| 회계방식 | 현금주의 단식부기 (공기업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 발생주의 복식부기(기업형) |
| 결산보고서 | 세입세출결산서 | 재무제표(재정운영, 상태보고서 등) |
| 보고형식 | 회계단위별 분리보고 | 회계단위간 연계와 통합보고 |
| 가치지향 | 행정 내부조직 중심 - 예산집행통제, 법규준수 | 주민의 삶의질 향상 -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 |
| 자기검증기능 | 없음 | 대차평형의 원리에 의한 회계오류의 자동 검증 |
| 정치적기반 | 중앙집권시대(상급기관 보고) | 지방분권시대(주민에 대한 보고) |

3)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현황

(1) 추진배경

정부부문 회계에 기업형 방식을 도입하자는 논의는 '95년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 학계, 시민단체 및 IMF 등 국제기구의 요구가 계기가 되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범 정부적으로 정책의제화 된 것은 '98년 국민의 정부 들어서이며 학계와 시민단체 및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가는 재경부에서 지방은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참여정부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로드맵에 포함('03. 4)하였으며 국정과제회의('04. 3, '05. 1)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99년 2월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제도화, 시험운동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07년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고 전 지자체에서 전면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2) 주요 추진실적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 학계에서 중요하게 제시하였던 복식부기 회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한 조건인 행정자치부의 일관된 정책의지와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보급,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이 우선적인 과제를 숙지하여 착실하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사 업 명 | 내 용 | 일 정 |
|-----------------------------|---|-----------------|
| 계 획 수 립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계획 | 99. 2 |
| 복식부기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험 운영 | 강남구, 부천시 대상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 | 99. 12 ~ '01. 3 |
| | 강남구, 부천시 대상 시험운영, 실제 업무 적용 | 01. 11 ~ '03. 9 |
| | 7개 지자체 확대 시험운영 및 전산시스템 표준화 | 03. 9 ~ '05. 2 |
| | 54개 지자체 추가 선정, 시험운영 대폭 확대(총 63개) | 04. 11 ~ |
| | 187개 추가, 전 지자체 확산보급 | 05. 9 ~ |
| 회계기준(안) 마련 |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구성, 회계기준 제정안 | 03. 8 ~ '05. 7 |
| 근 거 법 령 정비 | 지방재정법 개정(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동법 시행령 개정 | 05. 8 05. 12 |
| 교 육 | 공무원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와 시스템 운영 교육 실시(약 3만여명) | 99년 이후 |

4. 법령, 기준, 시스템 등의 구체적 추진성과

1)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는 그 근거가 법적으로 규율되는 것이 필요하다. 도입초창기부터 법적인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일단 어느 정도의 시험운영 결과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가장먼저 입법적 조치사항은 2004년에 이루어졌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것을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에 최초로 규정한 것이다. 이는 2004년 1월에 공포되었으며, 도입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 강한 것이었다. 이때 지방분권특별법 해설을 통해 2007년도에는 도입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

이 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분권특별법 제11조(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⑤ 지방자치단체는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2005년 8월에 지방재정법을 개정, 공포하였는데 복식부기 제도도입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추가적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05, 12 공포)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2조(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는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부채·순자산의 인식
2. 수익과 비용의 인식
3. 자산과 부채의 평가
4. 재무보고서의 작성기준
5. 재무제표의 양식
6. 그 밖에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4호의 재무보고서에는 결산총평, 재무제표(주석을 포함한다) 및 필수보충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63조(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①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에는 검토의 대상과 기준, 재무보고서의 적정성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그 밖에 검토의견의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이로써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은 법령에 근거를 갖고 추진되게 된 것이다.

2) 지방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의 작성 기준으로 경제적 사건을 인식하고 이를 측정, 기록,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공정하게 보고하기 위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관한 기준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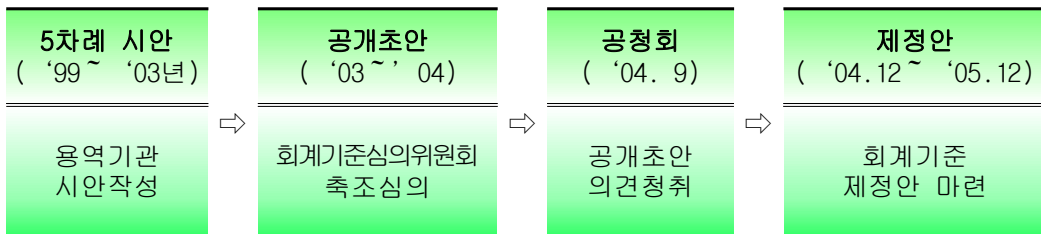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제정작업 추진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99년부터 ‘03. 9까지 용역기관에서 회계제도개선협의회(‘99~‘03)의 자문을 통해 회계기준 시안 작성 및 보완(5차)을 지속하였다.

그 이후에는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회계기준 공개초안을 작성하였다

-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 구성(위원장 김혁 등 17명, ‘03. 8)
- 본위원회 10회, 분야별 연구위원회 15회, 회계기준 축조심의위원회의 연구·토의를 거쳐 회계기준 공개초안 작성(‘04. 4. 30)
- 지방회계기준 공개초안 공표(‘04. 5. 20, 행자부장관 기자브리핑)

공개초안을 대상으로 공청회의 개최(‘04. 9) 및 지방회계기준 제정안 심의(‘04. 12)가 있었으며, 제정안을 기초로 관계 전문가 및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등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한 토의(4차례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정제정안 마련(‘05. 7)



지방회계기준에 의한 재무보고 체계로서는 다음과 같다.

- 보고실체는 250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자치단체)
- 회계실체는 보고실체내의 개별 회계단위로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유형을 분류함
- 회계실체별 재무제표 ⇒ 회계실체 유형별 재무제표 작성 ⇒ 보고실체의 재무제표 작성 ⇒ 외부 공시

지방회계기준의 구성과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장(제1조~제6조) 총칙
 - 회계기준의 제정목적, 기준의 적용, 용어의 정의, 재무보고의 목적과 일반원칙, 보고실체와 회계실체의 유형 등을 기술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를 총괄하여 보고
- 제2장(제7조~제9조) 재무보고서
 -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제표의 종류, 재무제표의 작성원칙 등을 포괄적으로 기술
- 제3장~제6장(제10조~제40조) 재무제표
 - 재정상태보고서 : 자산·부채·순자산의 정의, 인식기준 및 분류
 - 재정운영보고서 : 수익·비용의 정의, 인식기준 및 분류
 - 현금흐름보고서 : 현금흐름의 구분 및 작성기준
 - 순자산변동보고서 :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
- 제7장(제41조~제45조) 결산총평,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
- 제8장(제46조~제61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의 구분, 우발상황 및 회계변경을 설명
- 부칙(제1조~제5조) 시행일 및 경과규정 등

이러한 회계기준을 기초로 시험적으로 재무보고서를 10여개 지자체에서 작성하였는데 그 하나의 사례를 보명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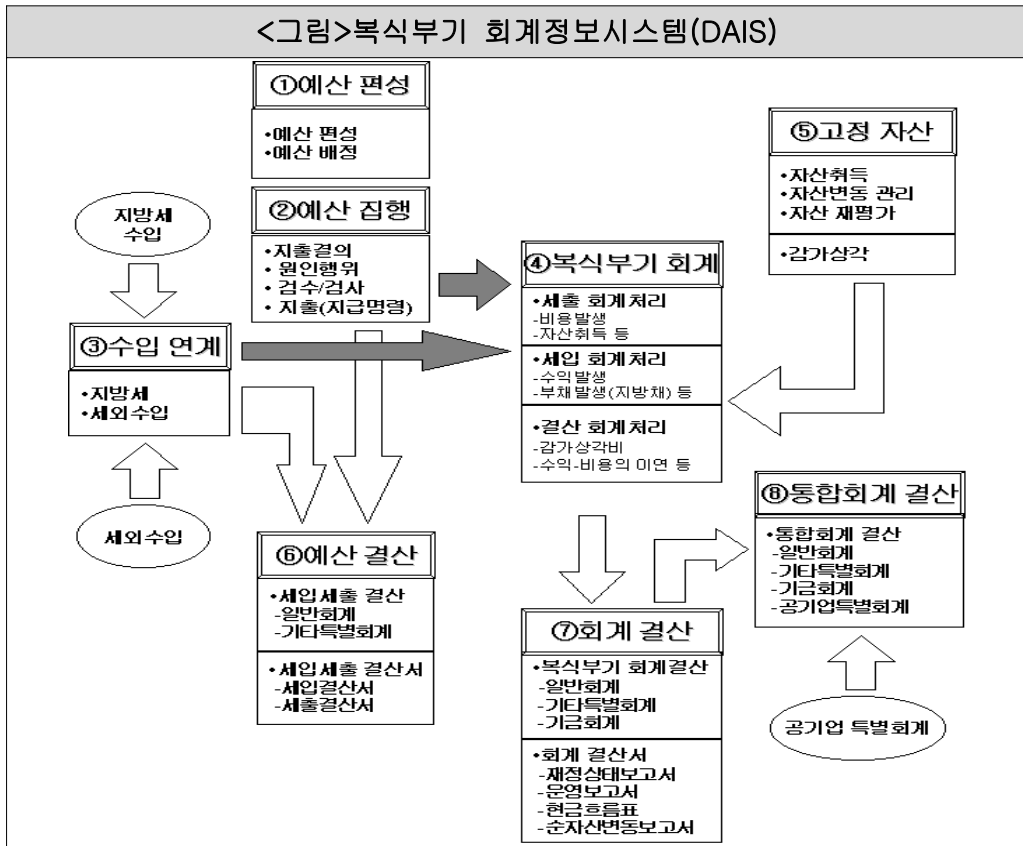
<표> 00시 재무회계결산(발생주의 복식부기)

(단위 : 백만원)

| 구분 | 과 목 | 일반회계 | 기타특별 | 기금 | 공기업 | 내부거래 | 계 | |
|---------------------------------------|--|----------|-----------|---------|--------|---------|---------|-----------|
| 재정 상태 보고 서 '04.12. .31 | 자산 | 유동자산 | 100,797 | 252,575 | 16,654 | 59,762 | - | 429,788 |
| | | 투자자산 | 337,861 | 1,089 | 581 | 9 | 330,877 | 8,663 |
| | | 일반유형자산 | 263,581 | 38,606 | - | 13,792 | - | 315,979 |
| | | 주민편의시설 | 159,724 | 2,125 | - | - | - | 161,849 |
| | | 사회기반시설 | 939,081 | 14,224 | - | 278,969 | - | 1,232,274 |
| | | 기타비유동자산 | 321 | - | - | 4,029 | - | 4,350 |
| | | 자산총계 | 1,801,365 | 308,619 | 17,235 | 365,561 | 330,877 | 2,152,903 |
| | 부채 | 유동부채 | 26,770 | 163,943 | - | 6,911 | - | 197,624 |
| | | 장기부채 | 102,283 | 43,617 | - | 48,275 | - | 194,175 |
| | | 부채총계 | 129,053 | 207,560 | - | 55,186 | - | 391,799 |
| | 순자산총계 | | 1,672,312 | 101,059 | 17,235 | 301,375 | 330,877 | 1,761,104 |
| | 부채및순자산총계 | | 1,801,365 | 308,619 | 17,235 | 356,561 | | 2,152,903 |
| | 재정 운영 보고 서 '04.1. 1- 12.31 | 수익 | 지방세수익 | 139,146 | - | - | - | - |
| 경상세외수익 | | | 19,186 | 60,438 | 597 | 61,686 | | 141,907 |
| 임시세외수익 | | | 23,605 | 9,908 | 112 | 2,191 | 1,317 | 34,499 |
| 정부간이전수익 | | | 223,805 | 5,828 | 2,090 | 72 | 7,572 | 224,223 |
| 계 | | | 405,742 | 76,174 | 2,799 | 63,949 | 8,889 | 539,775 |
| 비용 (성질) | | 인건비 | 102,733 | 559 | - | - | - | 103,292 |
| | | 운영비 | 75,063 | 3,338 | 54 | 47,382 | | 125,837 |
| | | 정부간이전비용 | 8,300 | 1,720 | 600 | - | 8,889 | 1,731 |
| | | 기타이전비용 | 105,566 | 204 | 1,336 | - | - | 107,106 |
| 기타비용 | | 14,227 | 54 | - | 10,510 | - | 24,791 | |
| 비용 (기능) | | 입법및선거 | 2,516 | - | - | - | - | 2,516 |
| | | 일반행정 | 69,259 | - | 667 | - | 900 | 69,026 |
| | | 교육및문화 | 24,420 | - | - | - | - | 24,420 |
| | | 보건및생활환경 | 33,620 | - | 792 | 57,892 | 523 | 91,782 |
| | | 사회보장 | 76,886 | 1,844 | 73 | - | 1,920 | 76,883 |
| | | 주택및지역개발 | 5,010 | 160 | 5 | - | 2,804 | 3,092 |
| | | 농수산 개발 | 7,125 | - | - | - | - | 7,125 |
| | | 지역경제개발 | 11,863 | - | 292 | - | 100 | 12,055 |
| | | 국토자원보존개발 | 42,920 | - | 160 | - | 2,347 | 40,734 |
| | | 교통관리 | 11,851 | 1,990 | - | - | 1,016 | 12,825 |
| | | 민방위관리 | 1,003 | - | - | - | - | 1,003 |
| | | 기타 | 19,415 | 1,881 | - | - | - | 21,296 |
| 계 | | 305,889 | 5,875 | 1,990 | 57,892 | 8,889 | 362,757 | |
| 운영차액 | | 99,853 | 70,299 | 809 | 6,057 | - | 177,018 | |

3)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과 보급

복식부기 전산시스템(DAIS)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품목별 예산제도를 기반으로 예산회계 프로세스(편성, 집행, 세입세출결산), 복식부기 회계프로세스(자동분개, 자산부채관리, 재무회계결산), 수입연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그림>과 같다.



이 시스템은 '99년부터 '03년 9월까지 개발(LADI)과 시험운영을 하였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자산관리시스템을 개발보완하고 표준화를 '05년 2월까지 표준화를 거쳐 전 지자체 보급용 시스템인 DAIS를 마련하였다.

이 시스템을 '05년 12월 전 지자체에 보급 하였으며 '07년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와 결산시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사업별예산제도를 기반으로 지방재정 전체를 포괄하고 국가-지방간 연계가 이뤄지는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e-호조)이 향후 품목별 제도를 기반으로 개발, 운영되는 DAIS를 대체할 계획이다.

5. 향후 과제

1) 제도적 미비사항 점검 및 보완 마무리

우선,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 후속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상 행정자치부장관에 위임한 제규정의 법제화를 추진('06. 10월까지)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작성요령, 결산검사위원회의 검토의견 제출 절차(결산지침 개정), 통합지출관제도(지방재정법 제90조) 운영방안 구체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처리를 위한 장표·서식의 체계와 양식 개선 및 재무회계규칙(표준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의 법정화로서 회계기준 최종 제정안에는 다음 사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 회계기준안을 기초로 재경부, 감사원,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등 관계부처 요구 사항과의 연계
-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 원가계산작성준칙 등 보완
- 시험운영기관의 운영 사례를 통한 요구사항 반영

일정은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최종안 마련('06. 6)과 행정자치부장관 공포('06. 7, 부령)의 단계를 거칠 것이다.

한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인 업무에 구현할 수 있는 실무업무처리 매뉴얼의 성격을 갖는 지침 작성('06. 10, 훈령)하는데 시험운영기관 업

무담당자의 처리경험과 의견을 반영할 것이다.

2)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험운영 추진

'07년 전면시행에 대비한 전 지자체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기반 조성, 자산부채 실사 및 회계처리 시뮬레이션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 시험운영기관의 주요업무 내용 >

□ 복식부기 업무전담 조직 구성 및 교육 이수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전담공무원의 제도 전문교육 이수(지방행정연구원, 2주과정)

□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DAIS) 설치·운영

-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은 향후 개발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이 보급되기 전까지 복식부기담당 중심의 활용 및 재무보고서 산출
- ※ 향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시 혼란 및 불편 최소화

□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 수입 및 지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입력
-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

□ 개시 재정상태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 자산·부채 실사

- 물품 및 공유재산 등 자료를 활용한 자산의 기초 개시 가액 결정
- 지방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에 대한 전수 조사

1~3차 시험운영기관(63개)은 재정상태 및 운영보고서 작성('06. 10)하고 4차 추가기관(187개)은 자산부채실사 및 재정상태보고서를 작성('06. 12)하게 된다.

시험운영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3)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공무원 교육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기관별로 교육대상 및 내용에 대한 기능을 분담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대상자별로 차별화된 교재 발간·배부하고 복식부기 교육지원단 구성 및 교육 강사진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업무담당자, 선행 시험운영기관 업무 숙련자와 그동안 도입과정에 참여한 교수, 전문가 등의 지원(정부회계학회 지역네트워크)을 추진하고 있다.

‘06년도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표와 같다.

| 교육대상 | 교육기관 | | 교육내용 | 일정 | 목표인원 |
|-----------------|------------|-------|---|------|--------|
| 업무전담자 | 지방행정연구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식부기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 능력 | 14회 | 700명 |
| 지방5-6급 | 지방혁신 인력개발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요, 기본개념 재무제표의 이해 | 3회 | 120명 |
| 일반공무원 | 시도공무원 교육원 | 전문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요, 개념 기본적인 회계처리 자산부채실사요령 재무제표의 이해 | 50회 | 2000명 |
| | | 소양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요, 도입논리 재무제표의 이해 | 200회 | 10000명 |
| 간부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 권역별 순회교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요, 기본개념 도입효과 재무제표의 이해 재무적 정책결정 등 | 8회 | 2000명 |
| 직장교육 | 지 자 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개요, 도입논리 | 150회 | 6000명 |

이러한 향후 과제가 면밀히 이행된다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부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도별 추진일정 >

- 전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 및 보완 : 2006년
 - 63개 지자체 재무보고서(시험용) 작성
 - 125개 지자체 자산부채실사 완료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 시행(법령규정) : 2007년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한 회계처리
 - 250개 전지자체의 자산부채실사 완료
 - 2006년 재무보고서 산출(시험용)
-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및 공시 : 2008년